

2018회계연도 관악구 세입·세출

# 결산검사의견서



관악구결산검사위원회



# 결산검사 의견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2019년 5월 13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감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9년 4월 5일부터 2019년 5월 3일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작성하여 제출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 채권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 위원

대표위원	길 용 환	(인) 
위 원	김 원 개	(인) 
위 원	조 기 완	(인) 
위 원	유 영 기	(인) 
위 원	한 태 경	(인) 



# 목 차

## I . 결 산 검 사 경 과

## II . 결산검사 총괄현황

1. 재 정 여 건	7
2. 세 입 · 세 출 결 산	8
3. 기 금 결 산	16
4. 재 무 제 표 결 산	18
5. 성 과 보 고 서	20
6. 결 산 서 첨 부 서 류	21
(1) 채 권	21
(2) 공유재산	21
(3) 물 품	22

## III . 개 선 및 권 고 사 항

1. 세 입 부 문	25
2. 세 출 부 문	30
3. 예 비 비	37
4. 공 유 재 산	38
5. 기 금	39
6. 재 무 제 표	40
7. 성 과 보 고 서	42



# I . 결산검사 경과





# 1. 결산검사 경과

1. 검사기간 : 2019. 4. 5. ~ 5. 3. (20일 간)

## 2. 결산검사위원

직 위	성 명	담 당 업 무	비 고
대표위원	길용환	결산검사 총괄	구의원
위 원	김원개	세입·세출 및 성과보고서	(前)구의원
위 원	조기완	세입·세출, 기금, 첨부서류 22종	(前)공무원
위 원	유영기	세입·세출, 기금, 첨부서류 22종	세무사
위 원	한태경	세입·세출 및 재무제표	공인회계사

## 3. 결산검사 세부일정

구 분	일자별	내 용	비 고
구청,보건소 의회사무국	2019. 4. 5.	일정 및 검사방향 협의	
	2019. 4. 8. ~ 5. 3.	부서별 결산검사 실시	
	2019. 5. 7. ~ 5.13.	결산검사 의견서 작성	

## 4. 결산검사 진행

- 결산검사는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하고, 필요시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요구 및 현지 확인조사 실시
- 결산검사 자료는 대표위원을 통하여 자료 요구
-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위원간 토의



## Ⅱ . 결산검사 총괄현황



## II. 결산검사 총괄현황

### 1. 재정여건

○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기금의 수입지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단위 : 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일반회계	세입	490,045,523,771	529,680,799,269	593,661,559,227	658,152,050,785	717,826,154,628
	세출	442,549,551,822	471,571,548,030	513,877,473,914	558,481,851,857	615,125,743,390
	결산상잉여금	47,495,971,949	58,109,251,239	79,784,085,313	99,670,198,928	102,700,411,238
특별회계	세입	28,387,459,343	25,213,194,190	24,681,429,868	27,989,979,719	30,653,800,949
	세출	16,682,743,510	11,849,805,821	11,499,631,890	14,094,543,430	13,832,632,890
	결산상잉여금	11,704,715,833	13,363,388,369	13,181,797,978	13,895,436,289	16,821,168,059
기 금	수입	6,901,490,735	4,277,361,078	7,578,613,251	10,454,461,893	6,785,478,163
	지출	3,198,714,360	6,202,522,400	4,608,810,532	7,542,956,605	4,221,672,500
	결산상잉여금	3,702,776,375	△1,925,161,322	2,969,802,719	2,911,505,288	2,563,805,663
총 계	세입(수입)	525,334,473,849	559,171,354,537	625,921,602,346	696,596,492,397	755,265,433,740
	세출(지출)	462,431,009,692	489,623,876,251	529,985,916,336	580,119,351,892	633,180,048,780
	결산상잉여금	62,903,464,157	69,547,478,286	95,935,686,010	116,477,140,505	122,085,384,960

○ 2018회계연도의 재정규모가 늘게 된 것은 재산세 등 지방세 세수의 증가 및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의 증가로 인한 보조금이 늘어난 것에서 기인한다.

○ 일반회계 세출을 주민수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규모”는 현년도에 1,220,594원이다.

## 2. 세입·세출 결산

### (1) 총괄

○ 2018회계연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 원)

회계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결산상 잉여금 (C=A-B)
합 계	729,688,221,640	748,479,955,577	628,958,376,280	119,521,579,297
일반회계	700,730,972,640	717,826,154,628	615,125,743,390	102,700,411,238
특별회계	28,957,249,000	30,653,800,949	13,832,632,890	16,821,168,059

회계별	현년도 채무상환	이월액(D)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합 계	0	27,664,115,860	8,779,655,850	0	8,487,671,830	74,590,135,757
일반회계	0	26,342,184,160	8,579,414,850	0	8,395,063,190	59,383,749,038
특별회계	0	1,321,931,700	200,241,000	0	92,608,640	15,206,386,719

-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748,479,955,577원으로 예산현액 729,688,221,640원보다 18,791,733,937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84.03%인 628,958,376,280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119,521,579,297원이다.
- 이중 명시이월비 27,664,115,860원, 사고이월비 8,779,655,850원, 보조금반납금 8,487,671,83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4,590,135,757원이다.
-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 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결산검사 결과 세계잉여금은 119,521,579,297원임이 확인된다.

## (2) 일반회계

### 가. 세 입

#### 일반회계 세입결산 확인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결산액	700,730,972,640	743,893,675,488	717,826,154,628	1,345,695,050	24,721,825,810
결산확인액	700,730,972,640	743,893,675,488	717,826,154,628	1,345,695,050	24,721,825,810
차 액	0	0	0	0	0

#### ○ 세입결산 개요

- 수납액 717,826,154,628원은 예산현액의 102.4%로서 17,095,181,988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세외수입 및 재산세 등의 증가에 기인한다.
- 2018회계연도 세입의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결산확인액과 결산액은 일치하였다.

####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의 대사

(단위 : 원)

수납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717,826,154,628	717,826,154,628	0

####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예산대비 징수결정액 (B/A)	징수결정 대비 수납액 (C/B)	징수결정 불납결손액 (D/B)
2018년	700,730,972,640	743,893,675,488	717,826,154,628	1,345,695,050	106.16	96.50	0.18
2017년	642,511,231,494	684,404,723,275	658,152,050,785	2,076,508,110	106.52	96.16	0.30
증감	58,219,741,146	59,488,952,213	59,674,103,843	△730,813,060	102.18	100.31	△1.23

- 예산대비 징수결정액이 증가(감소)된 주된 이유는 재산세 등 지방세의 수납증가로 인한 것이며, 전년도 658,152,050,785원보다 59,674,103,843원이 더 수납되었다.
- 불납결손의 주된 사유는 무재산 526,689,980원, 시효소멸 810,336,510원 등이다.

## 세목별 세입 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E = B-C-D)	
<b>총 계</b>	700,730,972,640	743,893,675,488	717,826,154,628	1,345,695,050	24,721,825,810	
<b>지방세</b>	73,999,518,000	79,568,681,300	78,691,358,100	38,406,090	838,917,110	
<b>세 외 수 입</b>	<b>소 계</b>	38,005,309,000	72,059,038,080	46,868,840,420	1,307,288,960	23,882,908,700
	<b>경상적세입</b>	31,363,266,000	37,497,792,450	37,126,502,990	0	371,289,460
	<b>임시적세입</b>	6,642,043,000	34,561,245,630	9,742,337,430	1,307,288,960	23,511,619,240
<b>지방교부세</b>	12,368,023,000	14,277,719,410	14,277,719,410	0	0	
<b>조정교부금등</b>	182,167,027,000	183,750,593,820	183,750,593,820	0	0	
<b>보조금등</b>	294,567,458,000	294,567,443,950	294,567,443,950	0	0	
<b>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b>	99,623,637,640	99,670,198,928	99,670,198,928	0	0	

○ 세입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10.96%인 78,691,358,100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6.53%인 46,868,840,420원이 수납되었다.

○ 지방교부세는 1.99%인 14,277,719,410원, 조정교부금 등은 25.60%인 183,750,593,820원, 보조금등은 41.04%인 294,567,443,950원이 수납되었다.



## 나. 세 출

### 일반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결산액	658,593,488,000	700,730,972,640	615,125,743,390	34,921,599,010	50,683,630,240
결산확인액	658,593,488,000	700,730,972,640	615,125,743,390	34,921,599,010	50,683,630,240
차 액	0	0	0	0	0

#### ○ 세출결산 개요

- 예산액은 658,593,488,000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42,137,484,640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700,730,972,640원임.
- 세출예산 전용액은 356,970,000원이었으며 전용의 주요내용은 신원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임시청사 분리 이전과 관련한 임차료 및 청사이전비 등이고,
- 이용 및 이체는 복지정책과 인력운영비 보수 등으로 227,450,000원을 이용하였으며, 2018.11.1.일자 조직개편으로 9,547,064,600원을 이체하였다.
- 예비비는 298,361,060원으로 침대 매트리스 라돈 검출로 인한 라돈측정기 구매 및 보급 등으로 지출하였다.
-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7.23%에 해당되는 50,683,630,240원이었으며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경상적 경비 등의 절감에 기인한다.
- 세출예산액은 구금고 세출계산서상의 지급액과 일치하였다.

###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의 대사

(단위 : 원)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615,125,743,390	615,125,743,390	0

- 세출결산서의 지출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다.

##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과목	예산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 (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E)	보조금 반납금(F)	집행잔액 (C-D-E-F)
<b>합 계</b>	658,593,488	42,137,485	700,730,973	615,125,743	34,921,599	8,395,063	42,288,568
일반공공행정	43,433,038	6,319,915	49,752,953	41,806,738	4,627,946	228,931	3,089,337
공공질서및안전	2,086,128	0	2,086,128	1,856,439	40,000	690	188,999
교 육	9,889,508	46,000	9,935,508	9,566,218	0	77,417	291,873
문 화 및 관 광	13,418,980	720,455	14,139,435	11,695,153	1,627,180	8,196	808,906
환 경 보 호	30,339,936	1,818,689	32,158,625	30,068,445	649,000	117,424	1,323,756
사 회 복 지	338,935,795	26,816,428	365,752,223	339,912,708	16,071,927	6,392,678	3,374,910
보 건	16,685,420	74,447	16,759,867	15,126,811	0	1,034,994	598,062
산업·중소기업	3,006,495	1,379,738	4,386,233	2,517,072	1,726,720	43,771	98,670
수 송 및 교 통	13,966,113	476,487	14,442,600	11,012,528	2,622,554	181	807,337
국토및지역개발	23,553,992	4,562,830	28,116,822	19,095,829	7,556,272	119,349	1,345,372
예 비 비	22,431,843	-304,953	22,126,890	0	0	0	22,126,890
기 타	140,846,240	227,450	141,073,690	132,467,804	0	371,432	8,234,454

- 세출예산현액 700,730,973천원에 대하여 615,125,743천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4,921,599천원, 보조금반납금은 8,395,063천원, 42,288,568천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다.
- 2018회계연도 기능별 지출액은 사회복지 339,912,708천원, 일반공공행정 41,806,738천원 등의 순이다.

### (3) 특별회계

#### 가. 세 입

#### 특별회계 세입결산 확인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28,957,249,000	44,775,068,393	30,653,800,949	252,179,950	13,869,087,49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83,000,000	1,427,567,560	919,294,710	22,684,150	485,588,700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5,291,629,000	5,270,630,947	5,270,630,947	0	0
주차장특별회계	22,764,279,000	38,058,187,566	24,445,192,972	229,495,800	13,383,498,794
기반시설특별회계	18,341,000	18,682,320	18,682,320	0	0
결산확인액	28,957,249,000	44,775,068,393	30,653,800,949	252,179,950	13,869,087,494
차 액	0	0	0	0	0

#### ○ 세입결산 개요

- 수납액 30,653,800,949원은 예산현액의 105.9%로서 1,696,551,949원이 초과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68.5%이다.
- 불납결손액은 252,179,950원으로서 이는 주로 시효소멸에 기인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30.9%인 13,869,087,494원으로 주로 납세태만에 기인한 것이다.
-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각 회계의 결산확인액과 일치하였다.

####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의 대사

(단위 : 원)

수납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30,653,800,949	30,653,800,949	0

-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다.

## 나. 세 출

### 특별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28,610,249,000	28,957,249,000	13,832,632,890	1,522,172,700	13,602,443,41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83,000,000	883,000,000	794,579,100	0	88,420,900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5,291,629,000	5,291,629,000	4,177,400	0	5,287,451,600
주차장특별회계	22,417,279,000	22,764,279,000	13,015,535,390	1,522,172,700	8,226,570,910
기반시설특별회계	18,341,000	18,341,000	18,341,000	0	0
결산확인액	28,610,249,000	28,957,249,000	13,832,632,890	1,522,172,700	13,602,443,410
차 액	0	0	0	0	0

#### ○ 세출결산 개요

- 예산액은 28,610,249,000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347,000,000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28,957,249,000원이었고
- 세출예산 전용액은 없었으며 이용 및 이체는 생활복지과 무기계약근로자등보수 등으로 37,584,000원을 이용하였으며, 2018.11.1.일자 조직개편으로 347,000,000원을 이체하였다.
- 예비비는 관악초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으로 256,341,000원을 지출하였다.

###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의 대사

(단위 : 원)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13,832,632,890	13,832,632,890	0

- 각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서의 지출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다.

#### [4]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 2018회계연도의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는 다음과 같다.

#### 명시이월, 사고이월 결산

(단위 : 원)

구 분	명시이월		사고이월		비고
	내 역	금 액	내 역	금 액	
합 계		27,664,115,860		8,779,655,850	
일반회계	신원동복합청사건립 외 75건	26,342,184,160	국공립어린이집확충 외 36건	8,579,414,850	
주차장특별회계	삼성동 제2공영 주차장 증축	1,321,931,700	남현소공원 공영주차장 건설	200,241,000	

○ 검사결과 명시이월비는 27,664,115,860원이고, 사고이월비는 8,779,655,850원이다.

### 3. 기금의 결산

○ 현년도 기금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 기 금 현 황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E=A+B)
		계(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19,802,937,186	2,563,805,663	6,785,478,163	4,221,672,500	22,366,742,849
재난관리기금	2,248,283,938	260,451,350	711,208,730	450,757,380	2,508,735,288
지방재정안정기금	3,521,583,328	2,070,051,957	2,070,051,957	0	5,591,635,285
체육진흥기금	646,771,474	△118,719,352	407,435,668	526,155,020	528,052,122
중소기업육성기금	3,867,858,128	△332,291,411	1,457,708,589	1,790,000,000	3,535,566,717
자활기금	1,256,979,063	7,940,063	67,740,063	59,800,000	1,264,919,126
장애인복지기금	606,320,764	296,102	11,296,102	11,000,000	606,616,866
양성평등기금	872,991,822	1,281,196	15,577,086	14,295,890	874,273,018
노인복지기금	582,393,213	△1,487,600	10,833,000	12,320,600	580,905,613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678,033,227	27,155,895	48,166,895	21,011,000	705,189,122
폐기물종합처리장 건설기금	2,382,407,274	556,375,497	556,375,497	0	2,938,782,771
옥외광고발전기금	718,097,740	△151,916,192	167,838,808	319,755,000	566,181,548
도로굴착복구기금	1,871,754,390	276,754,889	1,066,529,439	789,774,550	2,148,509,279
식품진흥기금	549,462,825	△32,086,731	194,716,329	226,803,060	517,376,094

○ 2018회계연도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현재의 조성액 19,802,937,186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6,785,478,163원을 더하고 사용액 4,221,672,500원을 공제한 22,366,742,849원이다.

○ 최근 5년간의 기금 조성·사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

(단위 : 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5년평균 증가율
전년도말 조성액	12,144,014,126	15,846,790,501	13,921,629,179	16,891,431,898	19,802,937,186	13.0
당해연도 조성액	6,901,490,735	4,277,361,078	7,578,613,251	10,454,461,893	6,785,478,163	△0.4
당해연도 사용액	3,198,714,360	6,202,522,400	4,608,810,532	7,542,956,605	4,221,672,500	7.2
당해연도말 조성액	15,846,790,501	13,921,629,179	16,891,431,898	19,802,937,186	22,366,742,849	9.0

○ 검사결과 재난관리기금 등 13개 기금의 현년도말 현재액은 22,366,742,849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보다 2,563,805,663원이 증가한 것이다.

## 4. 재무제표의 결산

### (1) 총괄현황(일반·특별회계·기금)

- 1) 자산 2,019,500백만원, 부채 29,788백만원, 순자산 1,989,712백만원  
 비용 597,285백만원, 수익 629,694백만원, 재정운영결과 32,409백만원(흑자)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결과		
	자산(A)	부채(B)	순자산(A-B)	비용(A)	수익(B)	운영결과(A-B)
2018	2,019,500	29,788	1,989,712	597,285	629,694	(32,409)
2017	1,984,828	26,462	1,958,366	559,730	594,836	(35,106)
증 감	34,672	3,326	31,346	37,555	34,858	2,697

### (2) 재정상태

#### 1) 현 황

- 자 산 : 2,019,500백만원 (전년도 대비 34,672백만원 증가)
- 부 채 : 29,788백만원 (전년도 대비 3,326백만원 증가)
- 순자산 : 1,989,712백만원 (전년도 대비 31,346백만원 증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7년		증 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유 동 자 산	182,907	9.06	176,908	8.91	5,999	3.39
투 자 자 산	11,351	0.56	10,604	0.53	747	7.04
일반유형자산	209,076	10.35	209,420	10.55	(344)	(0.16)
주민편의시설	344,815	17.07	323,281	16.29	21,534	6.66
사회기반시설	1,262,878	62.53	1,256,765	63.32	6,113	0.49
기타비유동자산	8,473	0.43	7,850	0.4	623	7.94
<b>자 산 총 계</b>	<b>2,019,500</b>	<b>100.00</b>	<b>1,984,828</b>	<b>100.00</b>	<b>34,672</b>	<b>1.75</b>
유 동 부 채	10,761	36.13	9,764	36.9	997	10.21
장기차입부채	-	-	-	-	-	-
기타비유동부채	19,027	63.87	16,698	63.1	2,329	13.95



부채총계	29,788	100.00	26,462	100.00	3,326	12.57
고정순자산	1,824,771	91.71	1,797,039	91.76	27,732	1.54
특정순자산	27,199	1.37	24,063	1.23	3,135	13.03
일반순자산	137,742	6.92	137,264	7.01	478	0.35
순자산총계	1,989,712	100.00	1,958,366	100.00	31,346	1.60
부채 및 순자산 총계	2,019,500		1,984,828		34,672	1.75

### (3) 재정운영

#### 1) 성질별 재정운영

- 비 용 : 597,285백만원 (전년도 대비 37,555백만원 증가)
- 수 익 : 629,694백만원 (전년도 대비 34,858백만원 증가)
- 운영차액 : △32,409백만원 (전년도 대비 2,697백만원 이익규모 감소)(흑자)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2017년		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인건비	144,615	24.21	136,257	24.34	8,358	6.13
운영비	94,773	15.87	89,526	15.99	5,247	5.86
정부간이전비용	15,270	2.56	11,181	2	4,089	36.57
민간등이전비용	325,861	54.56	297,848	53.21	28,013	9.41
기타비용	16,766	2.80	24,918	4.46	(8,152)	(32.72)
<b>비용총계</b>	<b>597,285</b>	<b>100</b>	<b>559,730</b>	<b>100</b>	<b>37,555</b>	<b>6.71</b>
자체조달수익	141,200	22.42	133,745	22.48	7,455	5.57
정부간이전수익	487,063	77.35	461,074	77.51	25,989	5.64
기타수익	1,431	0.23	17	0.01	1,414	8,317.65
<b>수익총계</b>	<b>629,694</b>	<b>100</b>	<b>594,836</b>	<b>100</b>	<b>34,858</b>	<b>5.86</b>
<b>재정운영결과</b>	<b>(32,409)</b>		<b>(35,106)</b>		<b>2,697</b>	<b>(7.68)</b>

#### 2) 기능별 재정운영

- 사업순원가 : 145,640백만원 (전년도 대비 48,052백만원 증가)
- 재정운영순원가 : 282,768백만원 (전년도 대비 2,500백만원 증가)
- 운영결과 : △32,409백만원 (전년도 대비 2,697백만원 감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7년				
	총원가	사업수익	순원가	내부거래	계	총원가	사업수익	순원가	내부거래	계
1.사업순원가	444,543	298,902	145,640	-	145,640	362,934	265,346	97,588	-	97,588
2.관리운영비	-	-	146,442	(5,317)	141,125	-	-	184,016	(8,481)	175,535
3.비배분비용	-	-	11,617	-	11,617	-	-	21,262	-	21,262
4.비배분수익	-	-	15,614	-	15,614	-	-	14,117	-	14,117
5.재정운영순원가 (1+2+3-4)	-	-	288,085	(5,317)	282,768	-	-	288,749	(8,481)	280,268
6.일반수익	-	-	320,494	(5,317)	315,177	-	-	323,855	(8,481)	315,374
7.재정운영결과 (5-6)	-	-	(32,409)	-	(32,409)	-	-	(35,106)	-	(35,106)

## 5. 성과보고서

- 2018년 성과보고서는 50개의 정책사업 목표의 148개 지표 중 초과달성 29개, 달성 97개, 미달성 22개로 성과를 달성하였다.
- 관악구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감사담당관 등은 100%를 달성한 반면, 미래성장추진단은 62.5%달성에 그치는 결과를 보였다.

###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

구 분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A)	초과달성, 달성수(B)	미달성	달성률 (A/B)
계	9	50	148	126	22	85.1
감사담당관	1	1	3	3	0	100.0
기획경제국	1	6	15	14	1	93.3
행정혁신국	1	7	21	18	3	85.7
복지문화국	1	13	39	33	6	84.6
청정도시국	1	6	19	16	3	84.2
안전건설교통국	1	8	24	19	5	79.1
미래성장추진단	1	3	8	5	3	62.5
보건소	1	5	17	16	1	94.1
의회사무국	1	1	2	2	0	100.0

## 6.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 (1) 채 권

#### 채 권 현 황

(단위 : 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연도 발생액(B)	당해연도 소멸액(C)	당해연도말 현재액(D=A+B-C)
합 계	11,288,398,453	3,541,685,596	3,242,372,949	11,587,711,100
일반회계	6,929,107,455	49,161,250	82,020,500	6,896,248,205
특별회계	179,997,338	112,570,081	230,568,084	61,999,335
기 금	4,179,293,660	3,379,954,265	2,929,784,365	4,629,463,560

○ 검사결과 채권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587,711,100원으로 확인되었다.

### (2) 공유재산

○ 2018연도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다.

####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 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 해 연 도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가 액	감 소 액	
합 계	1,839,088,187,422	14,406,035,580	1,810,157,720	1,851,750,862,552
행정재산	1,819,616,109,697	14,368,099,970	325,000,000	1,833,659,209,667
공용재산	304,117,444,168	5,558,318,850	120,000,000	309,555,763,018
공공용재산	1,512,472,825,529	8,809,781,120	205,000,000	1,521,077,606,649
보존용재산	3,025,840,000	0	0	3,025,840,000
일반재산	19,472,077,725	37,935,610	1,485,157,720	18,091,652,885

○ 검사결과 2018연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624,158㎡에 1,300,503,632,944원과 건물 192,262㎡에 259,329,785,853원, 임목축 302,808목 6,021,766,154원, 공작물 20,021건 276,195,596,821원, 무체재산 127건 1,327,856,230원, 유가증권 1건 700,000,000원, 용익물권 55건 7,460,194,550원, 회원권 7건 212,030,000원으로서 당해연도말 현재 재산액은 1,851,750,862,552원이다.

### (3) 물 품

○ 2018연도의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다.

#### 물품 증감 현황

(단위/ 수량 : 개, 금액 : 원)

구 분	전년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내역		당해연도말 보유현황
		취 득	처 분	
수 량	1,369	119	50	1,438
금 액	12,133,625,000	1,024,022,930	616,730,130	12,540,917,800

○ 검사결과 2018회계연도말 보유하고 있는 행정용 정수물품 현재액은 전년도말 12,133,625,000원에 대해 당해연도 신규취득 등으로 1,024,022,930원이 증가하였고, 불용물품의 처분 등으로 616,730,13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2,540,917,800원이다.

## Ⅲ. 개선 및 권고사항



# I. 세입 부분

## 1. 미수납액 징수율 제고

###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원)

구 분	미수납액	사 유 별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또는부도
합 계	38,590,913,304	4,357,097,610	1,294,002,520	19,036,394,968	200,144,870
일반회계	24,721,825,810	4,357,097,610	1,294,002,520	16,936,052,060	200,144,870
특별회계	13,869,087,494			2,100,342,908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85,588,700			485,588,700	
주차장 특별회계	13,383,498,794			1,614,754,208	

구 분	사 유 별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유예	소송계류	국외이주	자금압박	기 타
합 계	10,633,520	396,549,210	30,735,700	68,694,700	13,196,681,706
일반회계	10,633,520	396,549,210	30,735,700	68,694,700	1,427,937,120
특별회계					11,768,744,586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11,768,744,586

미수납액은 총 38,590,913,304원이며, 징수결정액에서 실제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계속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미수납액의 원인별 사유 중 무재산, 행방 불명, 폐업 또는 부도, 국외이주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까지 계속 이월 관리하고 있으나, 독촉장 발송 등 행정력과 비용만 낭비되어 관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건전재정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불납 결손 하고, 사후 관리를 통하여 징수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다음연도 이월 사유 중 납세태만과 기타 사유에 대하여는 매년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집중적으로 독려 및 징수하고,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나타나는 채권을 압류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징수하기 바랍니다.

## 2. 불납결손

### 불납결손 현황

(단위:원)

구 분	불납결손액	사 유 별				
		시효소멸	행방불명	무재산	평가액부족	기타
합 계	1,597,875,000	1,062,516,460	734,710	526,689,980	7,933,850	
일반회계	1,345,695,050	810,336,510	734,710	526,689,980	7,933,850	
특별회계	252,179,950	252,179,95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2,684,150	22,684,150				
주차장 특별회계	229,495,800	229,495,800				

불납결손액 1,597,875,000원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지난연도수입인 체납분 중에서 처분한 것으로 시효소멸이 66.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무재산, 평가액 부족, 행방불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방불명, 무재산, 평가액부족 등의 사유로 불납결손 처분한 경우 불납결손 후에도 지방세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불납결손처분을 취소하고 후속조치를 취하여 소멸시효로 인한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와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 3. 과오납 반환금

### 과오납 반환금 현황

(단위:원)

구 분	연 도	과오납 반환금액	사유별 구분					
			행정기관착오	납세자권리구제	납세자착오	차량·미등기	법령개정	기타
계	2018	687,791,740	38,665,250	48,949,530	44,235,560	34,834,100		521,107,300
	2017	948,554,820	15,525,610	7,319,670	24,969,380	39,373,680	16,312,150	845,054,330
일반회계	2018	624,208,620	38,665,250	48,949,530	29,302,690	34,834,100		472,457,050
	2017	812,131,860	15,525,610	7,319,670	19,116,200	39,373,680	16,312,150	714,484,550
특별회계	2018	63,583,120			14,932,870			48,650,250
	2017	136,422,960			5,853,180			130,569,780

과오납반환금은 모든 세입금의 징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사유는 행정기관착오, 납세자권리구제, 납세자착오, 차량미등기, 법령개정, 그리고 사유가 분명하지 않은 기타로 구분 됩니다. 과오납반환금은 금액의 크고 작음 보다 행정의 신뢰도 저하와 행정력 낭비라는 측면에서



최소화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상기 표와 같이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23.14% 감소하고, 특별회계는 53.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2017년도보다 많은 부분 개선되었으며, 사유별로 볼때는 각종 주민 프로그램 수강 신청 취소 반환금 등 기타사유가 가장 많고, 납세자권리구제, 납세자 착오, 행정기관착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4.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각 부서에서 나타나는 기타이자수입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의하면 "1.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과 "2.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 수입"으로 그 금액이 적고 추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예산편성 시에는 예산현액을 계상하지 않고, 결산과정에서 예산과목을 신설하여 결산하고 있으며, 결산검사 과정에서 부서간 착오로 세입조치된 것을 발견하여 수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 기타이자수입 현황

(단위:원)

구 분	2017년	2018년	증감율	비고
기타이자수입	73,796,300	48,372,250	34.45%(감)	

상기 표와 같이 전 부서의 기타이자수입 총액은 2018년도 48,372,250원으로 적은 금액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각 부서에서 예산과목을 신설하여 결산하는 것보다 세입을 총괄하는 재산취득세과에서 기타이자수입 총액을 3~5년간 시계열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발생한 기타이자수입을 재산취득세과 기타이자수입 계정으로 반납하며, 재산취득세과에서는 기타이자수입 계정에 입금된 전체 금액을 징수결정하여 세입조치 하는 것으로 결산을 하게 되면 결산서가 간결하게 정리될 것이므로 이와 같이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5.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에 그외수입은 1. 기타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 2. 기타 특별회계의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수입. 3. 지방자치단체 금고 출연 등 협력사업비. 4. 지역상생발전기금(재정지원계정)지원금 등에 해당하는 세입예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그외수입 현황

(단위:원)

구 분	2017년	2018년	증감율	비고
그외수입	2,588,259,300	3,105,302,760	19.98%(증)	

2018년도에 그외수입은 40개부서 중 36개 부서에서 발생하였고, 16개 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20개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시에는 예산현액을 계상하지 않고, 결산과정에서 예산과목을 신설하여 결산하고 있으며, 결산검사 과정에서 부서간 착오로 세입조치된 것을 발견하여 수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기 세입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의 사례 내용과 같이 발생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매년 발생하는 부서에서는 3~5년간 결산된 금액을 시계열 추계하여 예산현액을 편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 6.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은 위법행위 상태를 위법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위법행위가 없도록 하는 제도로 위법행위를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금전적인 부담을 주어 원상회복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며, 관련법에서는 대부분 년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의 경우 년 1회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5일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부분이 대폭 강화되어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경감할 수 있는 면적을 85㎡에서 60㎡로 축소하고, 이행강제금 최대 부과 기준 5회를 폐지하여 원상회복할 때까지 지속 부과하고, 가중 부과 범위를 50%에서 100%로 상향하여 위법상태를 그 이전 상태로 회복하도록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준법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된 점을 감안하여 공포 후 유예기간이 지나 시행하게 되면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 7. 순세계잉여금

총 세입금액에서 총 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결산상 잉여금이라 하며,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명시이월액·사고이월액·보조금반납금을 차감한 74,590,135천원이며, 전년도 대비 일반회계는 8,665,329천원 증가한 59,383,74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674,545천원 증가한 15,206,386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나 다음연도에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순기능적인 면도 있으나 다른 측면에서는 한 회계연도 내에 시행할 사업예산이 감소되어 부실공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므로 예산의 절감보다는 사업의 견실한 추진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b>계</b>	27,341,605	38,147,625	56,706,142	64,250,261	74,590,135
<b>일반회계</b>	16,529,912	25,698,473	43,775,908	50,718,420	59,383,749
<b>특별회계</b>	10,811,693	12,449,152	12,930,234	13,531,841	15,206,386

2019년도 당초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44,169,287천원을 계상하였으므로 실제 사용 가능 순세계잉여금은 15,214,462천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8,977,850천원 계상하였으므로 실제 사용 가능 순세계잉여금은 6,228,536천원입니다.

향후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순세계잉여금 반영을 가급적 낮추고,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순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권하며, 또 당초예산에 반영할 순세계잉여금의 추계 방법을 시계열 추계보다 각 부서별로 세목별 집행잔액을 단순추계방식으로 세심하게 추계하고, 추계된 항목에 대하여는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지출을 통제하여 과다 지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권고합니다.

## Ⅱ. 세출 부문

### 1. 회계별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내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잔액					
		계	보 조 금 정산잔액	예 산 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지출잔액	예비비
총 계	729,688,222	55,798,402	3,808,670	2,188,073	839,844	20,282,817	28,678,997
일반회계	700,730,973	42,288,567	3,806,342	2,158,496	404,420	13,792,419	22,126,890
특별회계	28,957,249	13,509,835	2,328	29,577	435,424	6,490,398	6,552,107
의 료 급 여 기 금	883,000						
주 민 소 득 지 원 및 생활안정기금	5,291,629	5,287,452		288		5,287,163	
주 차 장	22,764,279	8,222,383	2,328	29,289	435,424	1,203,235	6,552,107
기 반 시 설	18,341						

집행잔액의 원인별 사유를 검토한 결과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7.65%이며, 집행잔액 총계 대비 보조금정산잔액 6.82%, 예산절감 3.92%,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1.51%, 지출잔액 36.35%, 예비비 51.40%로 나타나 예비비와 지출잔액이 집행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의 발생은 예산의 절감 등으로 발생한 잉여금을 다음연도 추가경정예산의 재원 등으로 활용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할 경우 세입예산을 과다편성 하였거나 사업성과의 부진으로 나타날 수 있는 등 부정적 측면도 있으므로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존속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합니다.

### 2. 집행잔액 사유 중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관한 사항(일반회계)

#### 연도별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일반회계	1,768,613	426,529	390,804	511,607	404,420

예산은 목적에 적합하게 지출하여야 하나 정책변화나 주변 여건의 변화에 의하여 예정된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발생한 집행잔액을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집행잔액 원인별 분류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하게 분류할 것을 권고합니다.

위의 5년간 현황을 보면 2014년도 이후 그 발생 금액이 점차 낮아져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도는 다시 증가했다가 2018년도는 추세상 안정 단계로 접어들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금액이 증가할 경우 전체적인 예산운영 측면에서 볼 때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법정경비라 하더라도 지출 발생 빈도가 낮은 경비는 최소금액을 예산에 반영 한 후 지출 요인이 발생하면 전용·변경 또는 예비비를 활용함으로써 회계연도 내내 사장되는 예산이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하나,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관악신사시장 주차장 관련예산 347,000,000원을 전액 집행잔액 처리한 사례도 있었으므로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사업의 추진과정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 3. 집행잔액(30% 이상) 과다 발생

집행잔액의 발생은 예산 절감 등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각되며, 계획한 사업의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적은 예산으로 목표 달성과 동일한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것이므로 적극 장려하여야 합니다.

다만,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추후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일반회계 세부사업별 예산현액대비 30%를 초과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은 854,856천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사유를 보면, 사업 공법을 변경하여 예산을 절감한 사례, 계획변경 등에 따라 집행사유가 없어 지출하지 못하고 발생한 집행잔액 등 불가피한 사유도 상당부분 있으나, 당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측의 불확실성으로 다소 과다하게 편성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발생한 집행잔액과 30% 이상 과다발생한 집행잔액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정에서 감경정하고 다른 사업예산으로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 4.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세출예산은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이 이루어져야하므로 「지방재정법」 제47조에서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이러한 원칙적인 운영으로 인한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의 예산의 전용 제도를 운영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행정안전부)에서 전용과 변경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전용은 전용 후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 금지 등 법적, 내재적 한계 등을 두고 있으므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부족한 예산의 보충적 역할을 하는데 그쳐야 하는 등 이 제도 활용은 가급적 최소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예산의 전용과 변경 현황(일반회계)

(단위:천원)

연도	전용		변경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4년	30	394,695	34	649,190
2015년	25	731,381	37	1,092,853
2016년	25	242,090	28	1,425,336
2017년	20	307,994	38	731,096
2018년	30	356,970	40	546,159

상기 표와 같이 전용 금액은 2017년 대비 10건에 15.90% 증가하였으나 변경은 2건 증가하였고 금액은 2017년 대비 25.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이 예산의 변경 건수나 금액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당초 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업별 소요예산을 정확히 추계하지 못한 결과이고, 예산의 성립 이후 예산을 증·감할 사유가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조정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당초 예산 편성과정에서는 사업 계획 및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회에서 예산이 심의 의결된 후에는 예산의 전용 및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가급적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예산액을 증·감 조정한 후 집행하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 검사 과정에서 의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을 심의 의결한 9월 3일~9월 18일 사이에도 예산의 변경 절차를 이행한 사례도 있었으며, 추가경정예산을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9월을 전·후한 8월~10월 사이에 이루어진 전용은 9건 99,985천원, 변경은 6건에 19,719천원으로써 이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 5. 국·시비 보조금에 관한 사항

### 보조금 집행현황

(단위:원)

구 분		총사업비(예산액)	보조금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378,801,785,220	378,801,771,170	357,026,774,290	9,478,654,680	12,296,342,200
소 계	계	363,622,323,000	363,622,308,950	345,701,511,410	7,403,822,680	10,516,974,860
일반회계 (당해)	국비	156,418,892,000	156,418,889,060	153,923,648,580	744,350,000	1,750,890,480
	시도비	138,148,566,000	138,148,554,890	129,457,645,240	3,826,075,440	4,864,834,210
	시군구비	67,150,035,000	67,150,035,000	60,510,324,220	2,833,397,240	3,806,313,540
의류급여금 특별회계 (당해)	국비	421,415,000	421,415,000	377,204,775	0	44,210,225
	시도비	421,415,000	421,415,000	377,204,775	0	44,210,225
주차장 특별회계 (당해)	시도비	627,700,000	627,700,000	623,511,810	0	4,188,190
	시군구비	434,300,000	434,300,000	431,972,010	0	2,327,990
소 계	계	15,179,462,220	15,179,462,220	11,325,262,880	2,074,832,000	1,779,367,340
일반회계 (명시이월)	국비	347,100,000	347,100,000	347,100,000	0	0
	시도비	8,443,475,730	8,595,338,990	4,595,347,990	2,074,832,000	1,773,304,740
일반회계 (사고이월)	국비	638,991,563	638,991,563	636,434,733	0	2,556,830
	시도비	5,265,649,847	5,265,649,847	5,262,172,917	0	3,476,930
	시군구비	484,236,080	484,236,080	484,207,240	0	28,840

### 1) 보조금 가내시액과 확정내시액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국·시비 보조금은 예산 목적이 정해져 시달되며,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편성 당시 시달된 보조금 가내시액 통보 공문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당해 연도에 보조금 확정 내시액이 시달되면 간주처리 후 집행하고 있으므로 보조금 총사업비(예산액) 금액과 보조금시달 금액은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러가지 여건의 변화에 따라 전년도 통보된 보조금 가내시액과 당해연도 교부 시달 확정내시액이 증·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2017.7.31.행정안전부훈령 제2호) 제9조(지방예산 통계처리방법)에 지방자치단체 내부거래는 세입·세출은 반드시 일치하도록 편성하고, 광역과 기초 단체는 예산결정권과 의결권이 상호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세출이 반드시 일치할 수는 없으나 상호 협조하에 최대한 일치하도록 한 점, 『예산총칙』 제9조(간주처리)에서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세, 교부금 등은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사후 보고하도록 정한 내용을 감안하여 보조금이 시달되어 세입 조치된 후에는 예산현액과 보조금 수령액이 일치하도록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산현액을 증·감 시켜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겠습니다.

## 2)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하여 관련부서 간 합동 점검

보조금은 우리구의 세입계좌에 입금되면 간주처리를 통하여 세입조치하고, 구비와 일정 비율에 맞게 지출하여야 함에도 보조금 시달 공문 내용을 착오 해석하여 시비보조금은 집행하지 않고 구비만 집행한 사례, 이월하면서 구비만 이월하고 시비보조금은 전액 집행잔액 처리하는 등의 사례가 결산검사 과정에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고 시달된 국·시비 보조금의 목적에 맞게 관리하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악구 재무회계규칙』 제27조(집행상황의 조사) 제1항의 “기획예산과장과 재무과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각 과 또는 각 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연 1회 이상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활용하여 기획예산과, 재무과, 재산취득세과, 보조금 운영부서가 합동으로 매 분기마다 보조금 예산상황에 대하여 점검하고, 또 회계연도가 종료되기 전에는 증·감에 대한 정산 간주처리를 전체적으로 실시하여 나타날 수 있는 허수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할 것을 권고합니다.

## 3)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

보조금사업의 예산은 시달된 연도에 그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그 집행잔액과 이자에 대한 정산 결과를 보조금 시달 기관에 통보하고, 발급되는 집행잔액 반납 고지서에 의하여 그 다음연도 예산(대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반납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결산과정에서 2017년도 보조금 집행잔액과 그 이자 119,317,880원이 반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반납하겠다는 의견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반납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반납하지 않았다고 하나 상기와 같은 일반적인 과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은 금액으로도 2년에 걸쳐 완결할 사항을 3년에 걸쳐 처리함에 따른 행정력 손실과 우리구의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시달 기관에서 반납고지서가 오지 않을 경우 그 기관에 독촉하여 반납고지서를 발급 받아서 꼭 반납하기 바라며,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합니다.

## 4) 지방보조금의 출납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지방재정법」 제6조(회계연도) 및 「지방회계법」 제6조(회계연도)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에 끝난다.” 라고 정하고, 「지방회계법」 제7조(출납폐쇄 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 포함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어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서 규정을 두어 출납사무의 완결기한을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서의 보조금조서는 1월 20일까지의 상태에서 결산이 성립되므로 수령한 국·시비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민간단체 등에 전액 지급하여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정리되었는데 1월 20일 이후에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가 반납되어 보조금조서의 집행잔액과 반납액이 모순되게 정리되는 사례가 여러 곳에서 나타났으며, 출납사무 완결기한이 지난 후 반납되는 집행잔액과 이자는 별도로 추가경정예산에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반납하게 됩니다.

따라서 민간이전 등 예산인 지방보조금을 수령한 단체 등에서는 12월 31일까지 수령한 보조금을 정산하고 출납사무 완결기한인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집행잔액과 보조금 관리통장에서 발생된 이자를 반납하여 법정기한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 할 것을 권고합니다.

### 5) 국·시비 보조금 반환 통계목의 구분

국·시비 보조금 반환목에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예산현액으로 편성하고, 보조금반납 조서에는 보조금 집행잔액과 당해연도 반납액으로 표기하여 예산현액과 보조금 집행잔액과 당해연도 반납액이 모두 다른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국시비보조금 반환 목을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140쪽 예시와 같이 01 국고보조금반환금 1.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국고보조금 이자반납금 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시도비보조금 이자반납금으로 각각 구분 정리하기 바랍니다.

## 6. 민간이전 보조금 및 보상금 등의 관리 철저

국가 및 서울시, 그리고 우리구가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추진하거나 장려 및 권장하는 사업을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그 비용을 300단위 목 그룹인 경상이전의 일반보상금,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등이전, 전출금,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등의 편성목으로 편성하며, 경상이전 목 그룹의 예산현액은 408,521,468천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58.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들은 대부분 지방보조금 등으로 해당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아 사업의 효과성, 타당성, 독창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보조금 등을 지급한 후 지원금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회계처리 방법 시달 및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를 반납 받고, 정산서를 제출받아 집행의 적정성 및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그 자료를 다음 연도의 보조금 등의 지원금 심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수급받는 단체 등의 집행내역 등을 해당부서의 담당자를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미미하며, 결산서 보조금반납 명세서의 비고란 설명을 보면 서울특별시 등 외부기관과 합동점검에서 부정수급 등이 발견되어 환수한 사례는 3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부서의 지도·감독은 분기별로 실시하고, 회계연도가 종료되어 정산하는 시점에서는 지출증빙서류가 포함된 정산서를 제출받아 감사업무 경험이 있는 직원 등으로 《특별감사팀TF》를 구성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 업무를 종결하고, 특별감사결과 회계 처리 부적정 및 사업실적 부진 기관이나 단체에는 보조금 환수 및 지원 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도록 회계 질서를 바로잡고, 사업의 성과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실효성 있게 개선 할 것을 권고합니다.

## 7. 이월비

### 1) 명시이월

예산의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명시이월 현황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76건	63,647,550,260	36,585,116,260	28,566,230,860	26,342,184,160	

2018년도 명시이월 현황은 상기 표와 같으며, 사유는 사업비가 연말에 확보되어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움, 동절기 공사 중지, 수용부지 세입자 퇴거지연, 준공 지연으로 물품구입비 순연, 설계용역 확정 지연 등이며, 예산을 2019연도로 명시이월 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2) 사고이월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의 사고이월 규정에는 사고이월 가능 경우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 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등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고이월 현황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37건	55,475,538,260	40,207,171,930	30,836,526,770	8,579,414,850	

2018년도 사고이월 현황은 상기 표와 같으며, 이월 사유는 사업비가 연말에 확보되어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움, 연말에 사업 발주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움, 준공기한 미도래, 용역 확정 지연, 동절기 공사 중지, 심의 또는 자문위원회 절차 지연 등이며, 예산을 2019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Ⅲ. 예비비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예비비 지출 현황(일반회계)

(단위:원)

연 도	승인건수	지출승인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2013년	25	3,742,969,000	2,659,311,050	727,382,290	356,275,660
2014년	23	1,199,109,000	1,147,286,393	10,652,400	41,170,207
2015년	12	2,163,233,000	2,150,995,291	0	12,237,709
2016년	16	442,654,000	421,183,350	0	21,470,650
2017년	16	1,735,771,000	1,681,705,970	0	54,065,030
2018년	13	304,953,000	298,361,060	0	6,591,940

예비비의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 제3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고, 업무추진비·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는 실정법상의 제약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의 “예비비의 지출 내재적 제한”에 연도 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다음 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 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총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되도록 내재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 과정에서 일부 부서에서는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1월에 예비비 지출승인 받아 집행한 사례, 예비비 지출승인 받지 않고도 전용이나 변경으로 비용을 총당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예비비를 승인받아 사용한 사례 등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사용승인요청 전에 실정법상 제약이나 내재적 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전용이나 변경으로 비용을 총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 불가피한 경우에만 승인 요청하여 사용할 것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전·후한 기간에는 예비비 사용보다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 **IV. 공유재산 증감**

관악구가족문화복지센터 건립 관련 부지매입비, 신원동 복합청사 관련 부지매입비 등 4건 14,608,051,660원이 공유재산 중 토지 계정에 누락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등의 변동사항 발생 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다음달 10일까지 재무과로 통보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V. 기 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 의하면 기금은 대부분 사업목적이 하나이고, 하나의 기금은 통상 1개의 정책사업과 재무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적립성기금 등 제외) 동일 정책사업 내에서 세부항목 간의 금액 변경은 정책사업 총 지출금액의 20% 범위 안에서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할 수 있으나, 정책사업 총 지출금액의 20% 초과하는 금액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재난관리기금 등 총 13개의 기금 운용

(단위:원)

전년도말 조성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비고
	계	조성액	사용액		
19,802,937,186	2,563,805,663	6,785,478,163	4,221,672,500	22,366,742,84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용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는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25개구 가운데 강남구 등 14개 구에서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있으며, 2018년 말 기준 기금 보관상황은 정기예금 6,392,179,301원, 공공예금 15,974,563,548원으로 결산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 4월 기준 우리은행 금리는 공공예금 1.56%, 정기예금 12개월⇒2.18%, 6개월⇒2.10%, 3개월⇒1.82%로 조사되었으므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 운용하면 금리가 낮은 공공예금은 낮추고 상대적으로 정기예금은 높일 수 있으며, 정기예금 기간도 단기보다 이자가 유리한 장기로 높일 수 있어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되므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구의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우리구의 운용상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 VI. 재무제표

### 1. 외부 검토인 검토 절차

관악구청의 2018년도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 검토인은 행정안전부 훈령 제1호 제3조 5호 및 제6조의 요건을 만족함을 확인하였으며, 검토인의 검토보고서는 검토보고일(3월 18일) 이후 15일 이내 관악구청장에게 제출 및 결재(3월 20일)되어 결산검사 시작일 7일 전에 감사위원회에 제출 완료 되었으므로 동령 제 13조의 시기와 관련된 요건도 적정합니다. 따라서 검토인의 적격성 및 검토절차 상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2. 검토인의 검토 결과

검토인의 검토대상이 된 재무회계 결산서는 재무제표,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토인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관악구청의 2018년도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된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검토인의 검토보고서상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출납폐쇄기간 이후 결산검사일까지 검토인에게 추가로 검토를 의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훈령 제1조의 [별표1]에 대한 검토인의 검토 현황을 점검한 결과 검토인의 검토의견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3. 검토인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검토

검토인의 권고사항은 다음의 세 가지 항목이며, 권고사항의 발생배경 및 이에 대한 관악구청의 후속조치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등기 시점의 자산인식 권고

해당 권고사항은 재무회계와 예산회계, 공유재산 처리자의 자산 인식 시점이 각각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산 변동이 발생한 시점, 구체적으로는 등기 시점 등에 즉시 재무회계에서도 자산 인식이 일어나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는 재무회계 운영규정 상의 자산 인식 범위가 조금 더 넓으며, 그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업무처리의 시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부서가 등기사항에 대해 재무과에 즉시 공지하며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시에는 재무과의 사전 공지와 부서 간 협의, 사업담당자의 인수인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내부 검토 절차를 강화하여 누락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2) 자산변동회계처리의 즉시성, 정확성 제고

첫 번째 권고사항과 맥락을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각 사업부서와 재무과, 재무과 내에서도 여러 업무담당자의 협조가 필요한 자산변동회계처리의 특성 상 회계연도 내내 상시적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업무가 과중한 몇몇 부서의 경우 이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무과에서는 자산변동 시 즉시 회계처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그에 필요한 매뉴얼 제공과 실무적 협조를 병행하여 업무처리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3) 징수보고서 취합의 정확성 제고

해당 권고사항은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각 특별회계와 기금의 징수보고서 제출 시 정확성 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징수보고서는 물론이고 여타 결산자료 취합 과정에서 정확한 기초자료가 빠르게 취합 되는 것이 결산을 위해 중요한 요소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순환형 보직제도 하에서 모든 담당자의 업무숙지가 같은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간을 두고 개선해 가야 할 사항으로 파악됩니다.

재무과에서는 매년 결산검사 전 교육을 실시하여 담당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며, 결산 시 예산결산과의 교차 검증을 통하여 재무제표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Ⅷ. 성과보고서

2018년도에 관악구청에서는 성과지표로 총 148개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이중 초과달성 29개, 달성 97개, 미달성 22개 지표입니다.

### 성과 목표와 예산 결산 내용

(단위:원)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9	50	148	29	97	22	628,958,376,280	572,576,395,287	56,381,980,993

성과 계획단계에서는 성과지표 선정시 양적, 질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즉,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목표와 사업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지표가 필요하므로 부서별로 업무의 특성이 잘 나타나도록 다양하게 선정되어야 하고,

지표 설정과정에서는 각 부서별로 중요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표, 직원들이 노력해서 달성할 수 있는 지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연계하여 수치적으로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직원들의 노력에 비례하여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실제 사업의 성과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모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성과 평가 단계에서는 객관적으로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의하여 지표의 지속 여부, 개선 방향, 신규 지표 개발 편입 등을 다음년도 성과 계획단계에 환류시켜 운영하여야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의 의미가 있고, 성과 관리제도가 정착될 것입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정확한 원인분석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원인분석을 하지 않거나 단순히 성과를 나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사례, 목표를 쉽게 달성하기 위하여 목표수준을 너무 낮게 설정한 사례, 직원의 노력에 별로 영향이 없는 방문자수를 목표수준으로 설정한 사례 등은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목표수준이 전기 대비 큰 폭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명확한 해당 사유를 작성 관리하고, 목표달성과정 및 방법은 목표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초과달성이나 미달성인 경우에는 원인분석과 향후 개선사항을 반드시 작성하여 관리할 것을 권고합니다.